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345 |
|----------|------|

2016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시민건강국장 나백주)

- 노원아이존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로서,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심의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노원아이존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으로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의 수탁기간이 2017년 1월 6일 종료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해당 사무의 4차 민간위탁시기가 도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

노원아이존의 민간위탁 추진경과

- 1차 : 2009.4.24 ~ 2012.4.23 (3년, 사단법인 가족보건복지협회)
- 2차 : 2012.4.24 ~ 2014.1.06 (1년 9월, 사단법인 가족보건복지협회)
- 3차 : 2014.1.07 ~ 2017.1.06 (3년,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 4차 : 2017.1.07. ~ (미정, 미정) 동의안 제출 사유 발생

※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적합한 절차 안에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최초와 매 4회 마다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사무의 내용과 법적인 검토

- 시장이 민간위탁을 통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 표와 같으며, 노원아이존은 「정신보건법」 제3조²⁾에 따른 아동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

-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 민간위탁의 동의대상인 노원아이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으며, 「정신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신보건법」 등 관련 제3조 제4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자,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바, 금번 민간위탁은 상위법령과 조례를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2)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해 시장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제2항은 해당시설을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사무 기준으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노원아이존은 「정신보건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또는 고등교육과정에서 심리학을 이수한 자와 같이 특수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

4)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나목3)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에 두는 재활활동요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지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

답으로 한다.

라.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 노원아이존의 경우 현재 노원구 지역에서 2009년 이래 7년간 운영되어 온 시설로서 공적 전달체계에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신과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와 가정, 개인의 통합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서비스”보다는 “개인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이 많은 바, 아이존과 같이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방식이 보충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음.
- 민간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존을 통하여 민간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심리학 검사지의 활용과 전문가에 의한 측정 등을 통해 아동의 변화를 추적 및 관찰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4 종합의견

- 아동청소년기 대표적인 정서장애는 ADHD로 반항장애, 품행장애와 같은 동반장애 외에도 불안, 우울과 같은 기분장애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³⁾ 주로 약물 치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는 하지만 약물치료로 증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추후 또래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임.
-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인하여 성인의 정서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공적 전달체계에서 서비스로 제공 가능하나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공적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아이존의 서비스 대상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이들에게

3) 이정림, 강경숙(2012) “ADHD의 특성, 정의의 변화 및 생활에의 영향” 한국아동심리학회지 7(1) 115-137.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일이기도 함. 이들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추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노원아이존에서 제공하게 될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하겠는 바, 전문적 서비스는 공적 전달체계내의 전달자만으로는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345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노원아이존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노원아이존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26, 3층
- 시설규모 : 건물 298.73m²
- 개소일 : 2009. 4. 24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이상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초등학생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1.7 ~ 2020.1.6)
- 위탁
 -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 소요예산 : 316백만원 (2016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모)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4.24 ~ 2012.4.23 (3년, 사단법인 가족보건복지협회)
 - 2차 : 2012.4.24 ~ 2014.1. 6 (1년 9월, 사단법인 가족보건복지협회)
 - 3차 : 2014.1. 7 ~ 2017.1. 6 (3년,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직영으로 운영시 현재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시설 대체를 위해 추가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력·장비 등 전문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변하는 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15조

제15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신선혜 (☎2133 - 7549)